

# 2022년도 제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3. 14.(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이성엽, 송수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1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87건(안건번호 제2022-9931호~1021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9931호(순번 1번)는 ★★★ ★★★★★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9964~9966호(순번 34~36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클래식 음악 저작물을 판매 중인 사안으로, 안건 저작물과 채증 저작물이 상이하여 형식에 흠결이 있으며, 실질적 판단에 나아간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한 공유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564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2-1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인과 관련된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저작자명,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사이트명, 게시물 내용, 게시물명, 게시판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제2022-18회 시정권고안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14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571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 ★★'에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 '□□ □□: □□□ □□'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형태로 게시한 사안임. '☆☆ ☆☆☆'에서 스트리밍으로 이용 가능하고, '■■■■ ■■■■■' 등에서 DRM 처리된 파일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하여 전송 중인 바, 합법 시장 및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전송 중인 점,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 ○○○, ◆◆◆ 위원: 이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4번~3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클래식 음악저작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에 의하여 작곡된 '▽▽▽ ▽▽▽ ▽▽▽ ▽▽▽ ▽▽▽', '●●● ●●● ●●●, ●●●●●, ●●●●● ●●●-●, ●●●' 및 '△△△ △△△ △△, △△△, △△△△ △△, △△'을 포함한 다수의 클래식 음악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요청된 원저작물은 "▼▼, ▼▼▼, ▼▼ ▼ ▼▼▼▼ ▼▼▼ ▼▼▼ ▼▼▼" 음반저작물에 수록된 곡으로, 보호원 심의 시스템에 '▷▷▷▷▷▷▷▷'의 보호요청 저작물로 등록되어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4번은 게시물 제목이 '▶▶▶▶ ▶▶▶▶ ▶▶▶ ▶▶▶ ▶▶▶▶'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 자료에 의하여 다수의 클래식 곡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정한 음반을 제공하는 사정은 확인할 수 없고, 게시자가 임의로 수집한 음원 파일임.

사무처가 확인한 결과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전송 중인 음악저작물은 게시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음원저작물로 수록 음반, 발매일, 저작인접권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음. 음악저작물의 경우 악곡 자체인 음악저작물과, 저작물을 실연한 실연물, 음이 고정된 음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 경우 19세기에 사망한 사람이므로 보호기간이 만료한 공유저작물임. 다만 저작인접권의 경우 보호기간 내에 있을 수 있음.

우선, 안전으로 상정된 원저작물의 음원과 안전 게시물이 전송 중인 음원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심의 요청 형식의 흠결이 있음. 다음으로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없음. 게시자가 복제·전송 중인 음원은 공유저작물, 즉 저작권 보호 기간 및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이 모두 만료한 음원일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여 시정권고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34번~36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위원: 안전 저작물과 채증 저작물이 다르다는 사실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 ◁◁◁ 위원: 심의 대상으로 올라온 복제·전송중인 저작물의 이름과, 심의시스템상 등록된 보호 요청 저작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다만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을 연주한 음반의 경우 누가 연주했고 누가 음반을 제작했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저작권접권에 근거해 시정권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할 수밖에 없음. 보호 요청 저작물과 동일한 음반이 심의요청되는 경우에는 권리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가결하고 있음.
- ◁◁◁ 위원: 심의 시스템에 ▷▷▷▷▷▷▷▷의 보호 요청 저작물로 등록되어 있는 음원과 매칭이 되면 시정권고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일성 확인이 불가하여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준임. 이전에도 같은 기준으로 결정하였던 적이 있음.
- ◆◆◆ 위원: 지금 신고된 게시물에 포함된 음원 중에는 저작권이 있는 현대 음악저작물도 있음. 다만 신고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음.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요청된 저작물을 기준으로 동일성과 시정권고 대상성을 판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심의 대상 게시물이 전송중인 실제 저작물은 A 영화인데, B 영화로 지정되어 심의요청된 경우에는 안건과 동일하지 않아 부결하고 있음.
- ○○○ 위원: ▷▷▷ 보호 요청 저작물로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 보

호원에서 조사하였는데, 해당 저작물이 아니란 얘기인지?

- ◆◆◆ 위원: 그러함. '▽▽▽▽ ▽▽▽'가 어떤 '▽▽▽▽ ▽▽▽'인지 알 수가 없음.
- ◇◇◇ 위원: 신고된 게시물의 음원 목록을 보니 이미 저작권이 소멸한 것도 있음. 연주자가 오래전에 사망하였거나, 음반 발매 후 오래 지난 것들도 있음. ●● ●●●●●●●와 같은 연주자는 사망한 지 오래되어서 저작권이 소멸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저작권 및 저작권이 소멸된 음원을 게시하고 자유롭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공지한 클래식 음악 사이트도 있었음.
- ○○○ 위원: 클래식의 경우 식별하기가 힘들겠음.
- ◆◆◆ 위원: 클래식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의 권리로 보호됨.
- ◇◇◇ 위원: '◆◆◆ ●●● ●●●', '●●' 이렇게만 기재돼 있으면 어떤 저작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수많은 '●●'이 있고 연주자에 따라 그 권리 관계가 다 다름. '●●'이라 하여 다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님.
- ▲▲▲ 위원: 생존해 있는 작곡가라거나 최근 작품이라면 시정권고의 여지가 있지만 ◆◆◆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들의 저작물은 세계적인 공공의 문화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확히 확



인되지 않는 경우에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음.

- ◇◇◇◇ 위원: 예를 들어 ○○의 연주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녹음한 음원임. 이러한 최근 연주자들의 연주는 보호해야 함.
- ○○○ 위원: 연주자나 음반사 등 저작권 관계가 명확하다면 보호되어야 함.
- ▲▲▲ 위원: 해당 안건은 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음. 이견 없으시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부결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4, 35, 36번에 대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다음은 순번 2번~33번, 37번~287번으로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63번은 웹하드에서 제공 중인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임. 올해 1월에 개봉한 최신 뮤지컬 영화의 전체 분량을 판매 중임.  
(방송 '출장 십오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37번은 웹

하드에서 제공 중인 방송 '출장 십오야'임. tvN에서 방송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110캐시에 판매하고 있음.

(만화 '다이아몬드 에이스'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84번은 웹하드에서 만화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한 개 회차를 50포인트에 판매중임.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2번~33번, 37번~287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33번, 37번~287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9931호(순번 1번)에 대하여는 가결, 안전번호 제2022-9964호~9966호(순번 34번~36번)는 부결, 그 외(안전번호 제2022-9932~9963호, 제2022-9967호~1021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3. 21.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